

**KCR 4판(초안)의 “정지화상자료” 목록규칙에 관한
분석: ISBD(NBM), AACR2R, NCR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Graphic Materials” Cataloguing Rules in
KCR 4th ed.(draft)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Nam, Tae-Woo, Chung-Ang Univers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박현영, 협성대학교 학술정보처

Park, Hyun-Young, Library of Hyupsung University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에 있어서, 제8장 “정지화상자료”의 목록규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1987),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98), 그리고 日本目錄規則(1994)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이에,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는 정지화상자료에 있어서, KCR 4판의 “정지화상자료” 목록규칙이 목록규칙 사용자나 자료를 찾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지사항을 일관성있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초안을 더 수정·보완하여, KCR 4판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서론

한국목록규칙 4판(초안)¹⁾의 '제8장 정지화상 자료'는 모든 유형의 정지화상자료의 기술에 관해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KCR 4판 정지화상자료의 목록규칙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서지기술의 'ISBD(NB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1987),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Rev.'(AACR2R:1998)의 'Chapter8 Graphic Materials', 그리고 日本目錄規則(NCR:1996)의 '第8章 靜止畫資料'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정지화상자료'의 용어

'정지화상자료'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문헌정보학 관련 용어집이나 용어사전에서는 그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정지화상자료 또는 정지화상자료의 목록규칙에 관하여 단독으로 연구되어진 논문은 거의 없었으며, 비도서자료 또는 비책자자료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

'정지화상자료'는 주정보가 그림이나 도표로 이루어진 자료로, 음향이나 동영상과 같은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지화상"에 대하여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 'still image', 'static image', 'still picture'라고 영문표기를 하고 있으며, "정지화상"이란 움직임의 표현을 수반하지 않는 문서,

그림, 사진 등 시간 요소를 갖지 않는 화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간헐적인 움직임 또는 문자, 도형의 부분적인 단계 표시와 같은 경우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화상은 정지 화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²⁾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AACR2R에서 명명한 "Graphic Materials"를 근거로 한 적합한 용어로는 "Graphics"가 있었다. 이는 "도표, 그림, 사진, 그래프 등의 자료"라고 기술되어 있다.

상기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지화상"이나 "Graphics" 용어는 그 의미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Graphic"은 그림이나 도표와 같은 평면자료를 지칭하는 것이고, "정지화상"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이용하는 정지된 화상의 단면들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각 목록규칙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AACR2R에서는 "Graphic은 불투명체(예, 예술 원화, 복제화, 플래쉬 카드, 사진, 도면) 또는 광학장치의 방법으로, 움직임이 없이, 보거나 분사하여 제작(예, 필름스트립, 입체사진, 슬라이드)된 평면적인 표현물"³⁾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NCR에서는 "靜止畫資料는 내용을 수용할 경우에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지화의 기술에 대하여 규정한다.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는 정지화(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등)에 대해서는 제7장을 보라."라고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KCR4의 8장 정지화상자료 8.2.2 기술의 대상에서는 "평면에 그린 원화나, 복제화, 차트, 사진, 도면, 그리고 영상장치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료(필름스트립, 방사선사진, 슬라이드)"라고 규정하고 있다.

1) 韓國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초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편, 정보통신용어사전. <<http://itdic.empas.com/view.tsp/>>

3) AACR2R. 1998. p.618.

이드)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NCR에서는 정지화상자료의 대상으로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지화상자료인 반면, AACR2R과 KCR4에서는 평면자료와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는 정지화상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KCR4 내의 용어 정의에 있어서, 8장 정지화상자료에서 제시한 기술의 대상과 부록3 용어해설에서 정의한 정지화상자료(“정지화상자료는 사진이나 패도, 인형극, 그림, 포스터 등, 내용을 수용할 때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지화상”⁴⁾)과는 차이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용어에 있어서 근거나 기준이 모호한 ‘정지화상자료’ 용어는 일본목록규칙의 ‘靜止畫資料’에서 채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확한 용어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이용되어질 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3. ‘정지화상자료’의 조문별 분석

본 장에서는 KCR4의 정지화상자료의 ISBD(NBM), AACR2R, NCR을 대상으로 조문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각 조문의 항목은 KCR4를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3.1 8.0 총칙

‘이 장에서는 모든 유형의 “정지화상자료”의 기술에 관해 규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표준서지기술(ISBD)에서는 ‘ISBD(NBM)’에 포함되어 기술하고 있고, AACR2R에서는 ‘Graphic Materials’ 장으로 기술하고 있고, 그

리고, NCR에서는 ‘재생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지화상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KCR4의 ‘정지화상자료’라는 용어는 NCR의 ‘靜止畫資料’로부터 채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1.1 8.0.2 기술의 대상

KCR4의 정지화상자료에는 평면자료와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자료로 크게 구분하여 평면자료로서 원화, 복제화, 차트, 사진, 도면 등이 있고, 영상장치자료로서 필름스트립, 방사선사진, 슬라이드를 대상으로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정지화상자료의 대상을 각 목록규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BD(NBM)은 장의 부록C에서 비도서자료의 ‘일반 및 특수자료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정지화상에 해당하는 자료는 Graphic과 Visual projection자료를 들 수 있으며, Graphic 자료에는 복제화, 플래쉬 카드, 플립 차트, 실토퍼즐, 사진, 그림, 프레임 카드, 그림엽서, 포스터, 프린트, 목판화, 석판화, 동판화, 입체 카드, 연구프린터, 도면, 도표 등이 있고, Visual projection자료에는 filmstrip, film-strip, microscope slide, slide, stereograph reel, transparency 등이 포함된다. AACR2R에서는 평면자료와 영상장치를 이용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평면자료에는 원화, 복제물, 차트, 사진, 도면 등, 그리고 영상장치자료에는 필름 스트립, 방사선 사진, 슬라이드, 그래픽 자료의 전집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본목록규칙에서는 繪圖, 繪圖張 圖面, 掛圖, 掛圖張, 紙志居, 寫眞, 設計圖, 版畫, 美術原畫, 複製畫, 墨跡, 포스터 등을 정지화상자료에 포함하고 있다.

상기 각 목록규칙을 비교해 보면, KCR4의 정지화상자료의 대상은 AACR2R의 Graphic

4) 韓國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4版. 2002. 부록3.

Materials의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NCR에서는 정지화자료를 평면화로 제한하였으며, 특정자료종별 외에 특별히, 8.5.1.1A에 별법을 두어 미술작품의 기본기법의 종류를 표시하는 용어로 소축, 파스텔화, 유화, 수채화, 일본화, 동판화, 석판화, 공판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목록규칙에 자료의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의 대상은 파악하기 쉬우나, 향후 발전하는 과학기술 및 작품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정지화상자료가 생성될 것을 예측하여 목록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종류에 따라 규정을 제시하기 보다는 표제 및 주정보가 표기되거나 채기되는 상황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자료의 종류별 표기 방법은 예시를 통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목록가에게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3.2 8.1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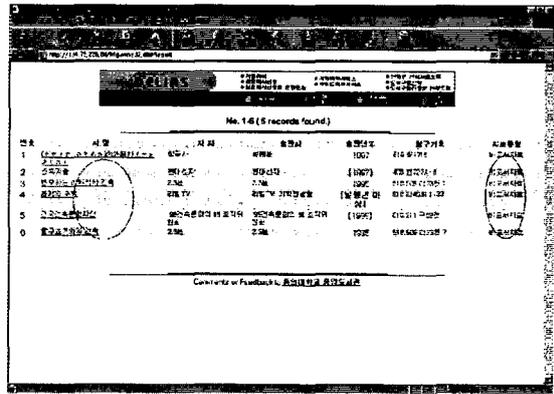
3.2.1 8.1.2 자료의 유형

ISBD(NBM) 장에서는 '부록C: 일반 및 특수 자료 명칭'을 제시하고 있으며, AACR2R에서는 "1.1C. General material designation에서 'LIST 1'과 'LIST 2'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영국기관에서는 'list 1'의 용어를 사용하고, 오스트렐리아, 캐나다, 미국의 기관에서는 'list 2'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KCR4는 영국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반자료표시(GMD)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CR4의 자료의 유형은 "정지화상자료에서는 '정지화상자료'(양서에서는 'graphic materials')를 자료유형 표시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지화상자료에 해당하는 일반자료표시로서, ISBD (NBM)에서는 "Graphic", "Visual pro-

jection"이라고 표기하고, AACR2R에서는 "activity card", "art original", "art", "reproduction", "chart", "filmstrip", "flash card", "kit", "picture", "realia", "slide", "technical drawing", "transparency"라고 표기하며, 그리고, NCR에서는 "靜止畫資料"라고 표기한다. 상기와 같이, 각 규칙을 살펴보면, ISBD(NBM)과 AACR2R은 자료유형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KCR4의 일반자료표시를 '[정지화상자료]'라고 기입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자료인가를 재빨리 확인시켜 줌으로서 그 자료 또는 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의 사용여부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는 GMD의 역할'⁵⁾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실제 자료유형을 비도서자료 또는 정지화상자료로 기술하였을 경우,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자료유형'으로 기술된 사례

찾고자 하는 슬라이드 자료를 검색하고자 할 때,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유형이 "비도서자료" 또는 "정지화상자료"로 나타나면 검색되어

5) 남태우, 비도서자료의 매체표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5집, 1988. p.120.

진 자료를 하나 하나의 세부사항으로 재검색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



(그림 2) 구체적으로 기술된 GMD 사례

(그림 2)의 사례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기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재검색에 들어가는 시간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로 자료와의 연계성있는 활용을 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비도서자료용(KORMARC)을 재제작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3.2.2 8.1.6 책임표시의 범위

범위는 1) 저자, 화가, 디자이너, 작도자, 촬영자, 작문자, 카피라이터, 편자, 조각가, 2) 작품과 관련된 인물 : 기획자, 주최자, 후원자를 두었다. 책임표시의 범위를 직접적인 저작자, 간접적인 저작자, 그리고 작품과 관련있는 인물로 구분하고, 더하여, '컬렉션의 수집자'는 필요에 따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3 8.5 형태사항

3.3.1 8.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8.5.1.2의 기술에 있어서, 가) 2)항 필름슬립

이나 필름스트립에서 만약 표제가 프레임별로 나뉘어져 있다면, 다른 프레임 번호 다음에 번호를 준다.

예) 1 filmstrip (41 fr., 4 title fr.)

나) 여러 부분으로 나뉜 필름슬립, 필름스트립, 입체화면, 플립차트, 트랜스패어런스의 부분들이 구성요소가 같은 수이거나(예, 프레임, 장), 또는 대략 유사하다면, 3 filmstrips (50 fr. each) 또는 transparencies (ca. 10 overlays each). 등을 사용한다. 반면, 그 번호가 연속적인 번호거나 구성요소 수의 표시를 생략한다면 구성요소의 전체 수를 준다.

예) 4 filmstrips (50 double fr. each)

2 transparencies (20 overlays)

4 flip charts

상기와 같이, KCR4에서는 정지화상자료의 특성상 형태 또는 발행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제시해 주어야 목록가가 적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8.5.2.2 기타 형태사항 기술방법에 있어서, KCR4에서는 1) 매체에 관한 사항(표현매체, 바탕재료의 종류, 판화의 묘화과정, 특정어, 복제방식), 2) 색채에 관한 사항(천연색, 흑백, 청백), 3) 보존용기(액자 등)를 기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NCR에서는 인쇄의 방법, 회구의 종류, 기반체의 종류, 판화의 기법, 색채, 특정의 용기로 제시하고 있다.

NCR과 같이 기록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각 종류별로 예시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3.3.2 8.5.3 크기

'8.5.3.2 기술방법에서 크기의 단위를 센티미터로 규정하고, 필름스트립, 필름슬립, 입체화

면은 밀리미터(mm)로 규정한다'로 일부 수정하도록 고려한다.

3.4 8.7 주기사항

주기사항에는 일반규칙과의 숫자 배열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즉, 기술총칙에서 1.7.3.17이 참고서목, 연보, 연표 색인 주기에 대한 규칙이나 정지화상자료의 8.7.3.17은 '내용주기'에 대한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오기와 탈자 등 잘못 기재된 글자가 많았으며, 자료의 특성상 형태와 발행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목록자가 충분한 목록기술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예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기사항의 각 항에서 필요에 따라, '1.7.3.○의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술총칙과 일치하지 않는 각 항의 숫자를 일치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각 항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도록 한다.

4. 오기, 탈자 및 표현상의 문제 등

4.1 오기 및 탈자

8.5.2.2 2)항의 색채를 '칼라, 흑백, 청백'에서 '칼라'를 '천연색'이라 수정한다.

8.5.3.1 (범위) '필름스트립과 필름슬립, 입체 사진을 제외한 모든 정지화상자료의 크기를 범위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1.5.3.1의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를 추가한다.

8.7.3.10의 '2.7.3.10'을 '1.7.3.10'으로 수정한다.

8.7.3.12의 '2.7.3.12'을 '1.7.3.12'로 수정한다.

8.5.2.2 마)항 필름스트립과 필름슬립, 플래시 카드, 슬라이드 자료에 음향이 별도로 수록될 경우 딸림자료를 참조하도록 추가해 준다.

4.2 예시에 대한 추가 기술

가) 예시에 있어서, 외국의 목록규칙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한국어로 표기하는 국내의 예시는 기술하도록 한다.

나) 복수의 매체를 표현하는 경우나 시리즈 형태일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예시를 기술하도록 한다.

5. 결론

한국목록규칙 4판 '정지화상자료(초안)'에 대하여 각 목록규칙을 비교해 본 결과, 日本目錄規則을 가장 많이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록규칙의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인용으로 인하여, 용어나 대상 등 규칙을 일관성있게 채택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 본문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아야 할 정지화상자료 목록규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지화상자료" 용어를 일관성있게 정의하고, 적용범위 또한 용어해설과 일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자료의 생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는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이용자에게 자료의 유형을 일차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일반자료표시를 구체화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한다.

셋째, 비도서자료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자료의 종류별로 예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한다.

넷째, 기술총칙을 기준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1.○.○.○의 규정에 따라 기술한다'를 필요한 부분에 기술하도록 한다.

다섯째, 비도서자료용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을 재제작하는데 기준이 되도록 이용자 자료검색까지 분석하여 규정하도록 한

다.

다섯째, 몇몇 발견되는 오기 및 탈자를 수정하도록 한다.

구. 부산, 부산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검색화면.

<<http://library.yonsei.ac.kr/>>

동의대학교중앙도서관. 검색화면.

<<http://delias.donggeui.ac.kr/>>

참고문헌

韓國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초안). 2002.

ISBD(NB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revised ed. London,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British Library Bibliographic Services, 1987.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98.

日本目錄規則(NCR). 1996.

남태우, 目錄에 있어서의 標目法の 變遷考 : 특히 영미계목록규칙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남태우, 非圖書資料의 媒體標示에 관한 研究, 도서관학 제15집 1988.

사공철 등,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 비도서자료용 포맷 및 기술규칙. 정보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992.

조명희, 비도서자료의 편목정책과 기술규칙,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1995.

김창하, 목록법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남석 저, 비도서자료: 정리의 이론과 실제.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0.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

<부록>“정지화상자료”의 목록규칙별 기술순서

KCR 4판(초안)	AACR2(1998)	ISBD(NBM:1987)	NCR(1996)
8.0 총칙 8.0.1 기술의 범위 8.0.2 기술의 대상 8.0.3 기술의 정보원 8.0.4 기술구조와 요소의 기재순서 8.0.5 기술방법	8.0 총칙 0A 범위 0B 정보원 0C 구두점 0D 기술 세부수준 0E 기술의 언어와 필사 0F 오기,오타 0G 엑센트와 기타 발음구분 0H 몇몇 주 정보원을 가진 항목	0 예비노트 0.1 범위 0.2 정의 0.3 ISBD(G)와 ISBD(NBM) 비교 0.4 구두점 0.5 정보원 0.6 기술 언어와 필사 0.7 요약 및 생략 0.8 대문자 사용 0.9 예시 0.10 미스프린트 0.11 기호, 등	8.0 총칙 8.0.1 기술범위 8.0.2 기술의 대상과 서지수준 8.0.3 기술의 정보원 8.0.4 기술해야할 서지사항과 기술순서 8.0.5 기술의 정조 8.0.6 기술의 방법
8.1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8.1.0 총칙 8.1.1 본표제 8.1.2 자료유형 8.1.3 대등표제 8.1.4 표제관련정보 8.1.5 권차, 회차, 연차 표시 8.1.6 책임표시	1.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1A 예비 규칙 1A1 구두점 1B 본표제 1C 알람자료표시 1D 대등서명 1E 기타 표제정보 1F 책임표시 1G 총서명없는 항목	1 요소의 특성 1.1 서명과 책임 표시 영역 1.2 본표제 1.2 알람자료표시(선택) 1.3 대등서명 1.4 기타 표제정보 1.5 책임표시	8.1 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8.1.1 본표제 8.1.2 자료종별(임의 규정 사항) 8.1.3 대등표제 8.1.4 표제관련정보 8.1.5 책임표시
8.2 판사항 8.2.1 판표시 8.2.2 특정판의 책임표시 8.2.3 부차적 판표시 8.2.4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	8.2 판 사항 2A 사전 규칙 2A1 구두점 2B 판 표시 2C 판의 책임표시 2D 판의 개정표시 2E 판의 개정에 관련한 책임표시	2 판 사항 2.1 판표시 2.2 대등판표시(선택) 2.3 판에 관련된 책임표시 2.4 추가 판 표시 2.5 판표시의 책임표시	8.2 판 사항 8.2.1 판표시 8.2.2 특정판의 책임표시 8.2.3 부가적 판표시 8.2.4 부가적 판의 책임표시
8.3 자료특성사항	8.3 자료(발행형태) 특성 사항	3 자료(발행형태)특성사항.	8.3 자료(간행방식)특성사항 (X)
8.4 발행(배포) 사항 8.4.1 발행지, 배포지 8.4.2 발행처, 배포처 8.4.3 발행년, 배포년 8.4.4 제작사항	8.4 발행, 배포 등 사항 4A 사전 규칙 4A1 구두점 4B 일관규정(총칙) 4C 발행자, 배포자 등 4D 발행자, 배포자의 역할 표시 4E 발행년, 배포년 등 4G 제작지, 제작자, 제작일 등	4 발행, 배포, 등 사항 4.1 발행지/배포지 4.2 발행처/배포처 4.3 배포 역할 표시(선택) 4.4 발행일/배포일 4.5 제작지(선택) 4.6 제작처(선택) 4.7 제작일(선택)	8.4 발행, 배포 등 사항 8.4.1 발행지, 배포지 등 8.4.2 발행처, 배포처 등 8.4.3 발행년, 배포년 등 8.4.4 제작항목 (제작지, 제작처, 제작년)
8.5 형태사항 8.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8.5.2 기타 형태사항 8.5.3 크기 8.5.4 딸림자료	8.5 형태 사항 5A 사전 규칙 5A1 구두점 5B 자료범위(특수자료표시를 포함) 5C 기타 형태적 세부 5C1 매체의 특수세부항목 5C2 칼라 5D 크기 5D2 필름스트립과 필름슬립 5D3 일체화 5D4 원화, 복제화, 복제본, 투명체 5D5 슬라이드 5D6 도면, 차트 5E 딸림자료	5 물리적 기술 사항 5.1 특수자료 지정과 범위 5.2 다른 물리적 세부 5.3 크기 5.4 딸림자료 표시(선택)	8.5 형태에 관한 사항 8.5.1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 8.5.2 기타 형태적 세부 8.5.3 크기 8.5.4 부속자료
8.6 총서사항 8.6.1 총서의 본표제 8.6.2 총서의 대등표제 8.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8.6.4 총서의 책임표시 8.6.5 총서의 ISSN 8.6.6 총서의 번호 8.6.7 하위총서	8.6 총서사항 6A 사전 규칙 6A1 구두점 6B 총서표시	6 총서사항 6.1 총서의 본표제 6.2 총서의 대등표제 6.3 총서의 표제정보 6.4 총서의 책임 표시 6.5 총서의 ISSN 6.6 총서내의 번호	8.6 총서 사항 8.6.1 총서의 본표제 8.6.2 총서의 대등표제 8.6.3 총서의 표제관련정보 8.6.4 총서의 책임표시 8.6.5 총서의 ISSN 8.6.6 총서의 번호 8.6.7 하위 총서의 서지적 사항
8.7 주기사항 8.7.1 주기의 범위 8.7.2 기술방법 8.7.3 주기의 종류와 기재순서	8.7 주기사항 7A 사전 규칙 7A1 구두점 7B 주기	7 주기사항 7.1 표제와 책임 표시에 관한 주기 7.2 자료의 판과 서지사에 관한 주기 7.3 자료특성사항에 관련한 주기 7.4 발행, 배포 등에 관한 주기 7.5 형태기술 사항에 관한 주기 7.6 총서사항에 관한 주기 7.7 내용에 관한 주기 7.8 입수에 관한 주기 7.9 필사에 관한 주기 7.10 요약용 제공하는 주기 7.11 이용/청중에 관한 주기 7.12 특수 ISBDs 또는 서지기관이나 목록조직의 문맥에서 중요성을 고려한 특별한 주기	8.7 주기 사항 8.7.1 통칙 8.7.2 기록의 방법 8.7.3 주기의 종류
8.8 표준번호 및 입수조건사항 8.8.1 표준번호 8.8.2 등록표제 8.8.3 입수조건표시	8.8 표준번호와 입수조건 사항 8A 사전 규칙 8A1 구두점 8B 표준번호 8C 주표제 8D 입수조건 8E 자격조건(Qualification)	8 표준번호와 이용가능영역 8.1 표준번호 8.3 입수조건과 가려	8.8 표준번호, 입수조건 사항 8.8.1 표준번호 8.8.2 등록표제(임의규정 사항) 8.8.3 입수조건.경가(임의규정)
	8.9 보유자료	부록A: 원리수준 기술	
	8.10 여러 가지 형태로 된 자료	부록B: 양방향 레코드	
	8.11 복사본, 사전, 기타 복제본	부록C: 일반, 특수 자료 표시	
		부록D: ISBD(NBM)에 근거한 영어 레코드로 사용하기 위한 축약어	
		부록E: 예문	